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2

발의연월일: 2020. 7. 22.

발 의 자:조경태・이명수・윤한홍

서정숙 • 윤두현 • 백종헌

서병수 · 유경준 · 김형동

배현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두고 있고,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음.

그런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어 행정력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자의 누락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된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어 2019년에 한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를 면제하고, 현재 가산세 비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1).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5"로, "1만분의 25"를 "10만분의 25"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본문에 따라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5"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본문에 따라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
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	성실 가산세) ①
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	
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	
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	
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	
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	
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	<u>.</u>
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	
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	1
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	
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	
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가. (생략)

-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금액의 100분의 50으로한다.
-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생 략)
 -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기 /됬레기 기·Ó \	
가. (현행과 같음)	
나	_
<u>1만분의</u>	
<u>5</u>	-
	-
<u>10</u> 만분의	
<u>25</u>	_
	_
	_
가산세를 부과하지 ㅇ	<u> </u>
 니한다.	_
<u>, </u>	
2	_
	_
	_
	-
	_
가. (현행과 같음)	_
 가. (현행과 같음) 나	_
, . – , – , .	_
나	
나	_
4	_

<u>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u> <u>로 한다</u>.

② (생 략)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 <u>니한다</u>.

② (현행과 같음)